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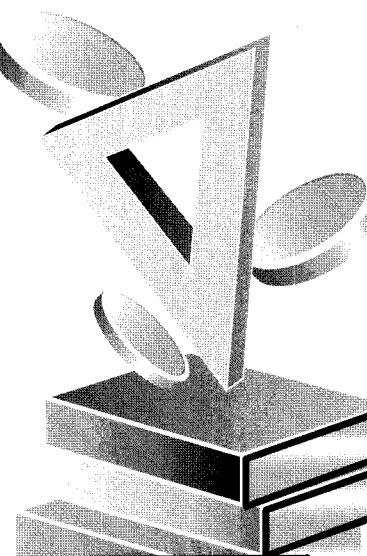
의안 번호

3628

민주당 이용섭위원장 LPG프로판 조세감면 입법발의

이용섭 의원실

그동안 우리협회와 LPG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한시적)하는 법안이 이용섭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됐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09. 1. 23

대표발의 이용섭 의원

발의자 이용섭 · 강창일 · 양승조 · 이성현 · 김재윤 · 최문순 · 배영식 · 홍자형 · 김호석 · 송민순 · 김우남 · 김영진 · 유성엽 · 우제창 · 박은수 · 김상희 · 임영호 · 양정례 · 김동철 · 윤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특히,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가격 급등은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LPG가격의 큰 폭 하락과 환율 하락에 따라 '09년 1월 국내 LPG가격이 인하되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0%이상 LPG가격이 급등하여 LPG프로판을 사용하는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부담인 것이 사실임

세계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국제 LPG가격 상승이 국내 LPG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LPG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LPG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작년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되었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Kg당 14원으로



인하하여 시행중이지만, 3월 이후 Kg당 20원으로 환원되면 LPG프로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임.

한편, '0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360억을 지원하였지만, 전국 전체가구의 1/3정도를 차지하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실 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106조의8 및 제111조의4 신설).

법률 제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4(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u>〈신 설〉</u> | <p>제106조의 8(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
| <u>〈신 설〉</u> | <p>제111조의4(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개별소비세법' 상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2. 비용 추계의 전제

-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행
- 2009년과 2010년 LPG프로판 판매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인 -4.35%를 적용(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 2009년과 2010년 전국 LPG프로판 평균가격은 200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비용 추계 결과

(1) 개별소비세

- 2009년 3월 환원조치시 정액세(20원/Kg당)를 기준으로 2009년 304.7억원, 2010년 349.6억원 총 654.3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09-'10년도 개별소비세 비용추계〉

| 년도 | 산출내역 |
|------|-------------------------------------------------------------------|
| 2009 | 2009년도 LPG프로판 판매량(추정) 1,828천톤 1,828천톤×20원/Kg×10개월/12개월=304.7억원 |
| 2010 | 2010년도 LPG프로판 판매량(추정) 1,748천톤 1,748천톤×20원/Kg=349.6억원 |

(2) 부가가치세

- 현행 정률세(10%)를 기준으로 2009년 2,767.9억원, 2010년 3,176.1억원 총 5,94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09-'10년도 부가가치세 비용추계〉

| 년도 | 산출내역 |
|------|----------------------------------------------------------------------------|
| 2009 | 2008년도 전국 LPG프로판 평균가격 1,817원/Kg(적용) 3,321.5억×181.7원×10개월/12개월=2,767.9억원 |
| 2010 | 2008년도 전국 LPG프로판 평균가격 1,817원/Kg(적용) 1,748천톤×181.7원=3,176.1억원 |

〈LPG프로판 판매량 추이〉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추정) | 2009(추정) | 2010(추정) |
|---------|-------|-------|-------|---------------------------|---------------------------------|---------------------------------|
| 판매량(천톤) | 2,184 | 2,081 | 1,911 | 1,911 | 1,828 | 1,748 |
| 비고 | - | - | - | 가격상승 외 특이사항 없어 전년수준 | '05-'08년 연평균 감소율 -4.35%적용 | '05-'08년 연평균 감소율 -4.35%적용 |

*'05~'07년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이용섭의원실 박영웅보좌관 |
| 연락처 | 788-2670 |